



적금

가입금액과 기간을 내 맘대로 정하는

PLUS

# 과학기술인<sup>으</sup>뜸적금 & 청년우대

청년우대 + 0.3%p↑

최대 연복리 4.0%!



이 설명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의 "과학기술인<sup>으</sup>뜸적금" 가입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가입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, 「목돈급여사업규약」에 따릅니다.

과학기술인<sup>으</sup>뜸적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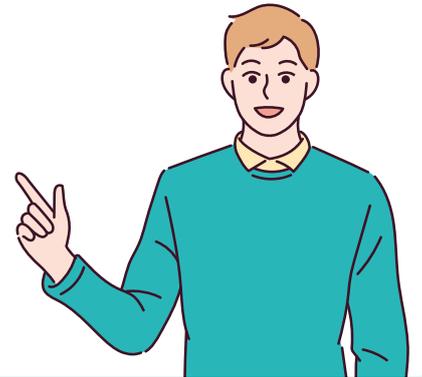
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금액과 가입기간을 정하고,  
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모으는 정기적금형 상품

가입자격

- ✓ 공제회 퇴직연금급여 또는 적립형공제급여 가입회원 및 퇴직회원
- ✓ 공제회 회원기관 10년 재직 후 퇴직한 자 (~2023.4월까지 한시적용)
- ✓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른 일반회원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

가입자격 직원
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
-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
-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
-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
-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,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
-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
-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
-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
-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
- 전문연구사업자의 임직원
-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임직원
-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
- 프론티어사업단, 융합사업단,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
- \* 비영리법인과 행정기관은 회원자격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



가입기간

✓ 가입기간



가입일은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지정

가입금액 및 한도

✓ 월납입액

최소 10만원 이상 가입한도 범위 내 본인선택 (1만원 단위)

✓ 가입한도

전 계좌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

\* 가입기간별 한도 : 1년(월 833만원), 2년(월 416만원), 3년(월 277만원), 5년(월 166만원)

\* 기존 1천만원 만들기 상품(17.7~19.12) 가입 금액과 한도 합산, 목돈(일시금) 5억한도에 포함되지 않음



가입한도 범위 내 복수 가입 가능, 가입기간 중 증·감좌 가능

지급률

✓ 적용지급률

최대 연복리 3.7%

(2022.8.1 기준)

가입기간	1년	2년	3년	5년
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율	3.3%	3.5%	3.7%	

\*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일 당시 금리가 만기일까지 적용

청년우대

✓ 가입조건

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자격 +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 = 0.3%p 우대

지급률

✓ 적용지급률

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율 + 우대금리 0.3%

최대 연복리 4.0%

(2022.8.1 기준)

가입기간	1년	2년	3년	5년
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율	3.6%	3.8%	4.0%	

✓ 가입한도

월 납입액 50만원 이내

✓ 신청기한

2020년 4월 21일 ~ 2023년 4월 20일(시행일로부터 3년)

✓ 가입방법

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신청 시 '청년과학기술인 우대' 선택



1인 1회, 1건만 가입가능 (만기수령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 불가)

##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

과학기술인 으뜸 적금  
& 청년우대

참고자료 →



구분	과학기술인 으뜸 적금							
	일반				청년우대			
가입대상	공제회 가입대상				공제회 가입대상 중 만 39세이하			
가입기간	1년	2년	3년	5년	1년	2년	3년	5년
회원지급률 (이율)	3.3%	3.5%	3.7%		과학기술인 으뜸 적금 + <b>0.3%p 우대</b>			
					<b>3.6%</b>	<b>3.8%</b>	<b>4.0%</b>	
납입주기 및 금액	매월 10만원 ~ 833만원(1만원단위)				매월 10만원 ~ 최대 50만원(1만원단위)			
가입횟수	한도 내 다건 가입 가능				1인 1회 1건 가입 (만기지급 및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)			
한도	1억원 (적금상품 전구좌 만기원금 합산 기준)							
증감좌	가능 (한도 내 증감좌 신청 제한 없음)							
만기지급	가입 시 지정한 계좌로 만기일 지급							
추가혜택	공제회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 (휴양시설, 제휴할인, 복지카드 등 총 196개)							

### 적용세율

✓ **일반과세 15.4%**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

✓ 비과세 자격이 되는 경우

**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입가능 (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)**

\* 단, 2020년 1월 1일 이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 
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제외

### 가입방법

#### 1 온라인

공제



과학기술인 으뜸 적금



가입신청안내



가입신청(회원/비회원) ✎

\* 비회원인 경우 회원자격 심사를 위해 근무처가 명시된 증빙자료 제출

#### 2 오프라인

목돈급여 가입신청서 ✎

**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공제회 제출**

\* 목돈급여가입신청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, 본인명의 신분증사본 제출

#### ✓ 제출처

(E-mail) info@sema.or.kr (fax) 02-3469-7799

\* 목돈급여 가입신청서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, CMS출금이체 신청서

\* 비회원인 경우 증빙서류로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4대보험가입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를 파일첨부로 제출

\* 비회원 중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은, 상단의 제출서류 이외에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임을 확인가능한 근무부서가 포함된 서류 추가 제출 요망(ex. 재직증명서 등)

✓ 출금일 **5영업일 전까지 가입신청 완료 시** 익월 1일 최초 부담금 인출

✓ 당월 접수마감일 이후 가입신청 건은 **차익월 1일에 인출**

부담금 납부

✓ 정기납부일  
매월 1일 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
✓ 부담금 납부  
가입시 지정한 본인 계좌에서 자동출금

- \* 잔액부족 등으로 인한 미출금 건에 한하여 다음 3영업일에 추가인출 시도
- \* 최종 미출금 시 해당월 미납처리, 미납금 추가납입 불가
- \* 초회미납 시 해당 신청건은 익월로 이월 (3회차 이월시 가입신청 반려)

✓ 가입 중 연속 3달 미납 시 납입중지

✓ 정기납부일 5영업일 이전 신청(가입, 증·감좌) 시 익월부터 인출 적용  
당월 접수마감 이후 신청 건은 차익월부터 인출 적용

✓ 다건 가입 시 인출 우선 순위  
**1순위**: 연체가 있는 건   **2순위**: 가입이 오래된 건   **3순위**: 누적금액이 큰 건

급여지급 (만기수령)

✓ 만기지급일  
최종납입일의 익월 1일

✓ 급여지급  
가입 시 지정한 지급계좌로 만기지급일에 지급

- \* 만기일 4영업일 전부터는 중도해지 신청 불가

✓ 재예치  
만기수령액을 목돈급여(만기지급형, 이자지급형, 원리금지급형, 연금지급형)로  
예치를 원할 경우 만기 재예치 가능

✓ 최종 납입일 이후 ~ 만기지급 3영업일전 오후 4시까지 신청가능

- \* 단, 연금지급형은 최소 3천만원부터 재예치 가능



**중도해지**

✓ 중도해지지급금  
원금 100% + (해지일까지 발생이자 × 중도해지지급률)

✓ 중도해지지급률

~90일미만	90일~180일미만	180일~1년 미만	1년~2년 미만	2년~3년 미만
이자의 50%	이자의 60%	이자의 70%	이자의 80%	이자의 90%

✓ 중도해지 신청방법

1 온라인



\* 신청한 다음 영업일부터 해지희망일자 지정가능(당일 지급 불가)

2 오프라인

목돈급여 지급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공제회 제출

\* 목돈급여 지급신청서, 신청회원의 통장사본, 신청회원의 주민등록증사본

✓ 제출처

(E-mail) info@sema.or.kr (fax) 02-3469-7799

✓ 정기출금일 전 영업일부터 ~ 정기출금일 다음영업일까지 해지일 지정 불가

**이자계산방법**

✓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경과기간에 대하여 회원지급률로 연복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지급

$$\sum_{h=1}^n [h \text{회차원금} \times [(1 + \text{지급률})^{\frac{\text{경과일수}}{365}} - 1]]$$

**안전장치**



✓ 정부는 공제회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·출연금 지원·지급 가능 (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)

**기타 유의사항**

✓ 회원이 가입기간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따라 중도해지지급금을 유족에게 지급.  
이자는 사망일+30일까지 회원지급률 적용, 그 이후는 공제회 퇴직연금 현금성자산지급률 ('22. 8월 현재 1.0%)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

✓ 연속 3회 미납에 의한 자동중도해지 시에도 회원본인의 급여지급청구에 의하여 급여지급되며,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지급률 적용 됨.

✓ 만기지급 시 수령계좌 폐쇄, 자동중도해지 후 회원의 청구지연 등 회원의 사유에 의한 급여지급지연 시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1%를 일할계산

**문의사항**

✓ 1577-0789 (내선 3번)